1. **참가 회사 정보**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회사명** | [국문] | | | **대표자** |  |
| [영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홈페이지** |  | |
| **주소** |  | | | | |
| **담당자** | 성명 |  | 직책 |  | |
| 전화 | [사무실] | 부서 |  | |
| [휴대폰] | Email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 | 성명 |  | 전화 | [사무실] | |
| Email |  | [휴대폰] | |

1. **전시품 정보**

|  |  |  |  |  |  |
| --- | --- | --- | --- | --- | --- |
| **품목 분류** | □ 제약/바이오/화학 | □ 의료기기 | □ 식품/원료/화장품 | □ Lab 장비/시약 | □ 유통/물류 |
| □ 환경/에너지/자원 | □ 의료기관 | □ 공정/기기 | □ 정보/연구개발 | □ 정부/단체/기관 |
| □ 전자 (IT) | □ CMO/CRO | □ 컨설팅 서비스 | □ 언론/매체 | □ 기타 |
| **전시품 소개** |  | | | | |
|  | | | | |

1. **부스신청 및 참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단가** | | **신청수량** | | | **합계** | **비고** |
| 독립부스 | 3,000,000원/부스(9㎡) | | 부스 | | | 원 | 바닥면적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가능 |
| 조립부스 | 3,300,000원/부스(9㎡) | | 부스 | | | 원 | 부스시공 포함 |
| 할인내역 | 조기신청 | ( ~2022.02.4) | | 10% | □ | 원 | 참가비 x 할인율 x 부스 수 |
| 사전신청 | ( ~2022.03.11) | | 5% | □ |
| 2회 연속참가 | (2021참가업체) | | 5% | □ |
| **총계** | | | | | | 원 |  |

* 참가비 납입 계좌번호: **농협 301-0083-4208-11 (예금주: BIO KOREA 사무국)**
* 계약금 납입: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총 참가비의 50% 입금 (계약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할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입: 2022년 4월 8일(금) 까지

**당 사는 참가규정(이면수록)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참가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본 참가계약서는 팩스(fax) 및 이메일(email)로 접수하여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계약담당자 | (인) |  | 대표이사 | (인) |

**BIO KOREA 사무국**

T. 1661-0810 / E. <exhibition@biokorea.org>

**BIO KOREA 2022 참가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 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BIO KOREA 2022’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충청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BIO KOREA 사무국)’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순서 및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성격 등을 감안한 주최자의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전시자의 위반행위로 타전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 5 조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2년 4월 8일 (금)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한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약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한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3. 2022년 3월 11일 이전 취소: 참가비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4. 2022년 3월 9-12일 ~ 4월 15일까지 취소: 참가비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5. 2022년 4월 16일 이후 취소: 원칙적으로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6.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및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전시품 반입, 설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과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